

[로스쿨 소식]

로스쿨 졸업생들, '5회 응시 제한' 헌법소원



로스쿨 졸업생들이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'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'에 '5회'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. '변호사시험법 제7조(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의 제한)' 전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도, 특히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'응시 기간 제한 부분'을 강조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청구 취지를 담았다. 이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심판회부 결정이 났으며 현재 본안 심리 중이다(2023헌마855).

청구인은 △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수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생계비를 벌다가 5년 기간이 지나 변시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채 응시 기회가 박탈당했거나 △결혼 후 자녀를 출산·양육하다가 5년 기간이 지나 응시 기회를 모두 제한당한 청구인 △40세가 넘는 만학도로 로스쿨에 입학해 정신 질환과 희귀 난치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

한 청구인 등이다.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하는 속도가 느리고 악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내년 2024년에는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(CBT, Computer Based Test)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2024년에 응시할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 조항이 '평등의 원칙' 위배라고도 주장한다.

이 사건 대리인 정형근(66·사법연수원 24기)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“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을 치러야 하는 ‘응시 기간’의 제한 요건만 없다면, 임신 출산이나,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의 산정 문제, 질병이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.”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고시 낭인 방지 등을 위해 응시 기회 제한이 필요하다면, 그 입법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응시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‘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응시’ 규정 중 ‘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’라는 응시 기간의 제한을 풀면 될 것”이라며 “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’라는 기간의 제한 요건만 완화되면 임신·출산이나, 병역의무 이행 기간의 산정 문제, 질병이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.”고 덧붙였다.